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발의년월일 : 2007. 2.
발 의 자 : 최형규 위원외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개정(2006.6.29 대통령령제19322호)으로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삭제되고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」의 개정(2006.6.29 대통령령제19565호)으로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별 정수를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2명과 지방행정주사 2명으로 함(안 제4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
  (시·군 및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)-삭제(2006 6. 29 대통령령 제19566호)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라. 협의사항 : 해당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 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"를 "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"로 한다.

제4조제1항 후단 내용 중 "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"를 "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지방별정직 2명과 지방행정주사 2명으로 보한다"로 한다.

제5조 중 "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"를 "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"로 하고, 제6조 중 "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"을 "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규칙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명 "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"로 한다.	**제명** "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"로 한다.
제4조(전문위원)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,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으로 보한다.	**제4조(전문위원)**①----------,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2명과 지방행정주사 2명으로 보한다.
②,③(생략)	②,③(현행과 같음)
제5조(직원의 정원)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.	**제5조(직원의 정원)**---------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은 따로 서울특별시마포구규칙으로 정한다.	**제6조(시행규칙)**----------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.